

작성 방법

※ 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기본사항

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직원현황 등을 적습니다.

- ①대부업등록여부란에는 「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여부를 표시합니다.
- ③주요사업 내용에는 금전대부, 전당포, 상품권매매 등을 적습니다.

2. 총수입금액명세

해당 과세기간의 대금업, 전당포, 기타 금융업 등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명세를 적습니다.

- ⑥건수란은 해당 과세기간 중 수입명세별로 각각 계약한 금전대부 등의 횟수를 적습니다.
- ⑧금전대부는 신용 및 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어음(채무증서)을 받고 대출한 경우, ⑩담보대출은 부동산, 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- ⑳상품권매매란은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으며, ㉑어음할인 등란은 어음 및 수표할인 등의 경우에 작성합니다.
- ㉒기타수입은 금전대부, 담보대출, 상품권매매 외의 경우에 적습니다.

3. 주요경비 사용금액 및 현황
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, ③대부계약서 건수 · ⑤광고선전비 · 사업장임차비용 등 제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.

- 자금현황, 이자율현황, 대부금현황, 대부계약서 건수는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적습니다.